연금 일부 지급정지(소득심사)제도 안내

국 군 재 정 관 리 단
The Armed Forces Financial Management Corps

연금 외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,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 ('15년 적용 월 4,411,667원)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액의 일부(최대 연금월액의 1/2 범위)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.



연금 일부 지급정지제도

① 대상자 : 연금수급자 중 연금 외 사업·근로소득이
월 4,411,667원을 초과하는 자(상이연금 수급자 포함)
※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, 이자, 배당, 기타소득 등은 제외

② 신청 시기 : 소득발생 후 다음달 15일 전 까지
· 국군재정관리단 소득신고 → 연금 외 소득심사 → 연금 일부 지급정지
※ 월 소득 4,411,667원 미만 시 신고 불필요
〔참고〕 연금 외 소득 미신고 시 2년 후 소급 추징 / 환불

〈소급 추징 / 환급 절차 예시〉

연금 외 소득발생	연금수급자의 국세청 소득자료 확인	'15년 소득심사 정산 시 소급반영(추징/환급)
2015년	2016년 9월	2017년 1월

※ 연금 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 일부지급 정지액이 소급 적용되어 일시에 많은 금액이 추징 될 수 있습니다.

③ 제출서류
· 최초 연금 외 소득 발생 시 : 연금 외 소득신고서(별지 제9호의2 서식)
· 소득 변동 발생 시 :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(별지 제9호의3 서식)
※ 신청서류 다운로드 : 군인연금 홈페이지(www.mps.go.kr) 메인메뉴 "서식방"

2015년 기준 연금일부지급정지액 예시표

(단위 : 원)

총 소 득 액			월 정지액
연 소득액	월 소득액	초과소득월액	
52,940,000	4,411,667	613	60
55,000,000	4,583,333	163,697	16,370
60,000,000	5,000,000	559,530	61,900
65,000,000	5,416,667	955,363	141,070
70,000,000	5,833,333	1,351,197	255,350
80,000,000	6,666,667	2,142,863	571,430
100,000,000	8,333,333	3,726,197	1,363,090

※ 월 소득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'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'을 적용하여 금액은 매년 달라집니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군인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, 서류접수는 팩스, 우편도 가능합니다.

- 팩스번호 : 02-797-0350
- 우편 :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-1호 퇴직연금과(우 04345)
- 문의전화 : 국방민원콜센터 1577 - 9090, 퇴직연금과 02- 3146 - 6481 ~ 9